

IV.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1. 기본가정

가. 경제변수 추정치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 지급받게 될 퇴직연금액과 그에 따른 소득세의 현재가치 계산에 필요한 변수 중 이자율은 국민연금 재정추계시 사용한 투자수익률을 이용하였으며, 임금인상률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연평균 증가율인 5.5%를 사용하였다 (<표 IV-1> 참조).

<표 IV-1> 경제변수 추정치

구 분	2003	2004	2005 ~10	2011 ~20	2020 ~30	2031 ~50	2051 ~
임금인상률	9.2%	6.5%	5.5%	5.5%	5.5%	5.5%	5.5%
투자수익률	7.5%	7.5%	7.5%	7.0%	6.0%	5.5%	5.0%
물가상승률	3.0%	3.0%	3.0%	3.0%	3.0%	3.0%	3.0%

주: 2003년 임금인상률은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의 전산업(5인 이상) 평균 임금인상률이며, 2004년 임금인상률은 상반기 인상률을 이용한 추정치임.

투자수익률은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수익률 또는 총자산수익률 자료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투자수익률을 사용하였다. 퇴직연금 역시 가입기간이 장기간이므로 국민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설정된 국민연금기금의 예상 투자수익률이 퇴직연금의 이자율 추정치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다

만, 자본의 세계화 등을 반영하여 장기적으로 투자수익률이 국제금리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임금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인 3%의 물가상승률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 하에 추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명목 임금상승률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제조업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인 5.5%를 적용하였다. 이는 미국, 캐나다 등 보다 다소 높게 설정된 편으로, 국내경제구조가 선진화되면서 노동생산성 증가가 국제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 구조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산업구조와 기술변화 등을 통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이 제고되어 임금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계산의 편의상 근속연수의 증가로 인한 승진이나 승급에 따른 임금상승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시점에서 현행 법정퇴직금액 또는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퇴직일시금액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시점에 결정된 법정퇴직금액이나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와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가정한 경제변수의 추정치들은 상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밝혀 둔다.

나. 임금액

임금은 서론에서 제시한 대로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소득계층별로 퇴직연금 추정에 사용한 임금액은 통계청의 2003년 『도시가계조사』에서 발표된 도시근로자가구의 1분위에서 10분위에 속하는 가구주들의 근로소득이다 (<표 IV-2> 참조). 이는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들의 퇴직금 및 연금세제의 차이를 보기 위함이다. 2003년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표 IV-1>에 있는 예상 명목임금인상률 6.5%를 적용하여 2004년 임금으로 환산하였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분위별로 40

6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세에서 45세에 이르고 있지만, 계산의 편의상 40세로 간주하였다.

<표 IV-2> 도시근로자 가구당 근로소득(2003년)

(단위: 원)

소득 구분	취업자수	가구 주 연 령	총수입	근로소득	가 구 주 근로소득
1분위	1.149	45.5	2,227,662	666,710	609,455
2분위	1.287	42.2	2,904,425	1,245,780	1,097,989
3분위	1.389	41.1	3,827,232	1,626,603	1,398,984
4분위	1.437	40.0	4,443,339	1,921,329	1,615,272
5분위	1.553	40.5	5,234,455	2,206,375	1,786,240
6분위	1.665	41.2	5,633,182	2,486,110	1,949,434
7분위	1.697	41.1	6,532,491	2,863,218	2,249,081
8분위	1.713	41.5	7,482,176	3,311,595	2,630,777
9분위	1.806	42.3	9,262,164	3,916,594	3,072,304
10분위	1.899	44.5	13,088,170	5,685,142	4,243,510

또 다른 유형은 가입연령, 기업규모, 그리고 재직기간에 따른 세액 차이를 보기 위하여 사용한 연령별 임금액이다. 이는 노동부 2002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의 산업별 통계 중 대분류에 속하는 종업원 수 30~99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전산업)와 종업원수 500인 이상의 대기업 근로자(전산업)의 연령별 임금구조 통계이다 (<표 IV-3>참조).

연령 및 근무연수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 27세, 35세, 40세의 총 3개 연령층으로 구분 산출하였는데, 27세는 25-29세, 35세는 35-39세, 40세는 40-44세의 월급여총액을 대표하는 연령으로 간주하였다. 연령별 임금수준은 2002년 금액이었기 때문에 2004년 기준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표 IV-1>의 2003년 및 2004년 임금인상률(예상)인 9.2%와 6.5%로 조정하였다.

<표 IV-3> 기업규모별·연령별 임금구조 통계(전산업)

(단위: 원)

구분		평균 연령	월급여 총액	정액급여	초과 급여	연간 특별급여	근로자수
규모	연령						
30-99인	-19	18.6	869,902	754,470	110,432	483,542	15,008
	20-24	22.3	981,205	876,684	104,340	1,173,337	156,371
	25-29	27.1	1,282,918	1,182,752	100,167	2,050,638	260,764
	30-34	31.9	1,602,767	1,476,897	125,869	3,404,942	246,346
	35-39	37.0	1,754,209	1,602,522	151,688	3,995,321	209,739
	40-44	41.9	1,755,157	1,585,370	169,787	4,397,114	206,932
	45-49	46.8	1,730,386	1,570,609	159,777	4,366,356	142,333
	50-54	51.9	1,681,938	1,521,258	160,680	4,254,530	98,817
	55-59	56.9	1,451,009	1,341,907	109,103	3,108,642	67,979
	60-	63.5	1,194,359	1,136,834	57,525	1,941,439	59,560
	전체	37.3	1,509,210	1,378,382	130,828	3,197,726	1,463,849
500인 이 상	-19	18.3	976,089	748,581	227,508	1,933,490	19,398
	20-24	22.4	1,084,109	896,396	187,713	3,759,250	89,236
	25-29	27.2	1,412,903	1,231,552	181,351	5,818,802	184,730
	30-34	31.9	1,812,824	1,575,967	236,857	8,513,499	221,004
	35-39	37.0	2,105,694	1,811,296	294,398	10,092,958	196,290
	40-44	41.9	2,215,466	1,887,026	328,440	10,647,130	161,286
	45-49	46.8	2,223,153	1,874,128	349,024	10,956,661	102,605
	50-54	51.8	2,076,030	1,732,495	343,535	9,921,626	58,313
	55-59	56.5	2,028,360	1,780,821	247,539	8,814,565	22,662
	60-	62.5	2,039,850	1,924,677	115,173	9,145,316	7,546
	전체	35.8	1,842,304	1,578,827	263,477	8,465,392	1,063,070

2. 퇴직일시금의 산출

가. 소득계층별 퇴직일시금

<표 IV-4>는 <표 IV-2>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근로소득을 이용하여 추정한 40세 근로자의 소득계층별 월평균임금으로 2004년을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2004년 현재 40세 근로자가 정년인 2019년까지 15년간 근속하고 매년 명목임금인상률이 <표 IV-1>과 같이 5.5%라고 가

7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정하면, 확정급여형에서 동 근로자의 퇴직일시금은 소득계층별로 퇴직 당시의 월평균임금×근속연수를 통하여 산출할 수 있다. 한편 확정급여형의 퇴직일시금은 2005년부터 매년 1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각출되고 <표 IV-1>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2019년까지 부리된 금액이다.

<표 IV-4> 소득계층별 퇴직일시금

(단위: 원)

연령	소득 계층	월평균임금		근속 년수	퇴직일시금	
		2004년	2019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40	1분위	649,070	1,449,033	15	21,735,489	24,160,124
	2분위	1,169,358	2,610,565	15	39,158,473	43,526,677
	3분위	1,489,918	3,326,207	15	49,893,102	55,458,775
	4분위	1,720,265	3,840,450	15	57,606,757	64,032,902
	5분위	1,902,346	4,246,942	15	63,704,127	70,810,447
	6분위	2,076,147	4,634,950	15	69,524,248	77,279,812
	7분위	2,395,271	5,347,387	15	80,210,802	89,158,472
	8분위	2,801,778	6,254,902	15	93,823,536	104,289,734
	9분위	3,272,004	7,304,671	15	109,570,072	121,792,826
	10분위	4,519,338	10,089,316	15	151,339,743	168,221,985

나. 기업규모별·연령별 퇴직일시금

기업규모별·연령별 퇴직일시금은 소득계층별 퇴직일시금과 달리 일정 연령에 이르면 실질임금인상이 정지되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명목임금이 인상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고용불안과 조기퇴직이 상시화되어 있는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고령층에 달할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등의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포기함으로써 고용연장을 도모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표 IV-5>를 보면 종업원수 500인 이상 대기업의 27세 근로자의 경우 15년 후인 42세까지 임금이 5.5%로 인상하나, 그 이후는 물가상승률인 3% 만큼만 인상되고, 35세는 10년 후인 45세부터, 40세 역시

10년 후인 50세부터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고 가정하였다. 종업원수 30인 이상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27세나 35세의 경우는 대기업과 동일하지만 40세의 경우 5년 후인 45세부터는 물가상승률만큼 임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IV-5> 연령별 임금인상률 가정

규모	연령	임금인상률				
		~5년	~10년	~15년	~20년	~28년
대기업	27	5.5%	5.5%	5.5%	3.0%	3.0%
	35	5.5%	5.5%	3.0%	3.0%	
	40	5.5%	5.5%	3.0%		
중소기업	27	5.5%	5.5%	5.5%	3.0%	3.0%
	35	5.5%	5.5%	3.0%	3.0%	
	40	5.5%	3.0%	3.0%		

<표 IV-6>는 <표 IV-3>의 기업규모별·연령별 임금구조통계를 이용하여 대기업(종업원 500인 이상)과 중소기업(근로자 30 이상 100인 미만)의 특정연령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을 추정한 것이다.

2004년 현재 각 연령별 근로자들이 정년인 55세까지 근속하고 매년도의 임금인상률이 <표 IV-5>와 같다고 가정하는 경우, 퇴직당시 동 근로자의 퇴직일시금은 확정급여형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퇴직당시의 월평균임금×근속연수를 통하여 산출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매년 각출된 월평균임금이 <표 IV-1>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정년 때까지 부리된 금액을 합계하여 산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임금인상이 일정 연령에서 둔화 내지 정지 되는 경우(예: 임금피크제)에는 매년 월평균임금이 각출되어 투자수익률로 부리되는 확정급여형의 퇴직일시금액이 확정기여형보다 많게 산출되었다.¹⁾

<표 IV-6> 기업규모별·연령별 퇴직일시금

(단위 : 원)

규모	연령	월평균임금				근속연수	퇴직일시금	
		2004년	2019년 40세 정년	2024년 35세 정년	2032년 27세 정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대기업	27	1,643,178	3,668,356	3,778,407	4,786,373	28	134,018,435	207,181,859
	35	2,448,880	4,849,291	5,621,657		20	112,433,141	150,336,371
	40	2,576,543	5,102,089			15	76,531,339	93,886,282
중소기업	27	1,492,008	3,330,873	3,430,799	4,346,033	28	121,688,936	188,121,433
	35	2,040,110	4,039,841	4,683,283		20	93,665,665	125,242,041
	40	2,041,212	3,585,277			15	46,390,377	70,194,312

다. IRA(개인퇴직계좌) 퇴직일시금

이직을 하는 경우 직전 사용자에게 받은 퇴직금(현행 퇴직금제도)이나 직전 사용자가 설정한 퇴직연금으로부터 받는 퇴직일시금을 소득세 이연상태로 개인퇴직계좌(IRA)에 재예치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정년에 도달한 시점에서 IRA의 투자수익률로 부리되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표 IV-8>과 같다. 개인퇴직계좌의 투자수익률로는 <표 IV-1>의 투자수익률을 사용하였으며, 임금인상률은 <표 IV-5>의 연령별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였다. 회사규모별, 연령별 재직기간은

- 1) 이와 반대로 임금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일시금이 확정기여형의 경우보다 많을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퇴직연금의 종류별로 퇴직일시금의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시금의 소득세와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소득세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일시금 계산에 사용된 경제변수들을 민감도 분석 등을 행하지 않고 단순가정치로 처리하였다.

2003년 전산업 표준근로자의 연령별 평균근속연수를 감안하여 <표 IV-7>과 같다고 가정하였으며, 구직에는 평균 1년이 소요된다고 가정하였다.

대기업 27세 근로자의 경우, 15년 동안 평균 임금인상률 5.5%로 근무하였다가 퇴직하고, 퇴직과 동시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재예치함으로써 퇴직소득세를 정년인 55세까지 이연시킬 수 있다. 이후 1년 동안의 구직기간을 거쳐 43세에 재입사하여 12년을 근무한 후 정년에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IRA에서 부리된 퇴직일시금과 현 직장의 퇴직일시금이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잦은 이직현상을 반영하여 근속연수를 대기업의 경우보다 짧게 설정하였다.

<표 IV-7> 기업규모별·연령별 IRA 퇴직일시금

규모	연령	근속연수 및 구직기간				퇴직일시금 (IRA)		
		이관 퇴직일시금(이직시)						
대기업	27	15년		1년	12년		175,908,796원	
		55,025,342원			57,436,472원			
	35	10년		1년	9년		129,848,373원	
		41,830,408원			50,594,914원			
	40	10년			1년	4년		82,136,160원
		44,011,070원				20,408,357원		
중소기업	27	5년	1년	10년	1년	11년	156,317,839원	
		9,749,974원		33,308,727원		47,806,368원		
	35	10년	1년	5년	1년	3년	106,586,393원	
		34,848,026원		20,805,183원		14,049,850원		
	40	5년	1년	5년	1년	3년	58,054,031원	
		13,338,915원		15,927,363원		10,755,832원		

3. 퇴직연금의 산출

55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확정연금은 최장 20년, 생존연금은 종신동안 지급되므로 연금지급액 계산에 사용된 이자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표 IV-1>의 투자수익률 중 연금지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되는 투자수익률을 사용하였다. 27세의 근로자는 28년 후인 2032년에 55세 정년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대신 20년 확정연금을 받는 것을 선택하였다면 연금의 종료시점이 2052년이 되므로 연금의 예정이자율은 <표 IV-1>에 따라 당시의 예상투자수익률인 5.0%가 된다. 연금지급기간을 최소 5년부터 산출한 것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에서 연금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표 IV-8> 연금지급 기간에 따른 투자수익률

구분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27세	5.5% (2037년)	5.5% (2042년)	5.5% (2047년)	5.0% (2052년)	5.0% (종신)	5.0% (종신)
35세	6.0% (2029년)	5.5% (2034년)	5.5% (2039년)	5.5% (2044년)	5.0% (종신)	5.0% (종신)
40세	6.0% (2024년)	6.0% (2029년)	5.0% (2034년)	5.5% (2039년)	5.0% (종신)	5.0% (종신)

주: (연도)는 연금지급종료 시점임

연금은 55세부터 1년에 한번 매년도 말에 지급받는 일시납 기말급 연금이며, 연금지급기간 중 유지비가 0.5% 부가되는 무배당상품이라고 가정하였다. 종신연금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보험상품의 관례상 12년 동안 연금가입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연금이 확정 지급된다고 가정하였다. 종신연금 계산에는 제4회 경험생명표의 개인연금 생존·사망률이 사

용되었다.

각 연령별, 지급기간별로 연간 연금 1원에 필요한 일시납 보험료는 <표 IV-9>과 같다. 예를 들어 2004년 현재 27세인 근로자가 55세가 되는 2032년 정년 퇴직일에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원씩을 지급받기 위해 납입해야하는 일시납 보험료는 7.57531원이다. 2004년 현재 40세의 근로자가 55세가 되는 시점에서 사망시까지 1원씩의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납입해야하는 일시납 보험료는 13.85584원,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사망시까지 1원씩의 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5.22527원을 일시납보험료로 납입하여야 한다(12년은 생사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표 IV-9> 연금의 일시납 보험료

(단위: 원)

연령	확정형				종신형(12년 확정)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27	4.29164	7.57531	10.08777	12.52452	13.85584	15.22527
35	4.23343	7.57531	10.08777	12.01013	13.85584	15.22527
40	4.23343	7.39689	10.08777	12.01013	13.85584	15.22527

가. 소득계층별 퇴직연금액 산출

<표 IV-9>을 이용하여 55세 당시 받게 되는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매년 받게 되는 연금금액을 산출한 것이 <표 IV-10>과 <표 IV-11>이다. 확정연금의 연금지급기간은 5년, 10년, 15년, 20년으로 하였으며, 연금수급권자의 생존시까지 계속해서 연금이 지급되는 생존연금의 경우 개인형과 부부형으로 구분하였으며,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12년까지는 연금수급권자의 생존여부에 관계없이 확정 지급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예를 들어 2004년 현재 소득 7분위에 속하는 40세의 근로자가

7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2019년 정년인 55세에 달했을 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80,210,802원이 된다. 이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대신 15년 만기의 생존연금 수령을 택하는 경우 55세말부터 매년 7,951,293원을 15년 동안 수령하게 된다.

<표 IV-10>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1)

(단위: 원)

소득 계층	퇴직일시금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1분위	21,735,489	5,064,616	2,869,253	2,154,638
2분위	39,158,473	9,124,370	5,169,221	3,881,777
3분위	49,893,102	11,625,661	6,586,275	4,945,901
4분위	57,606,757	13,423,030	7,604,537	5,710,555
5분위	63,704,127	14,843,787	8,409,437	6,314,987
6분위	69,524,248	16,199,941	9,177,738	6,891,935
7분위	80,210,802	18,690,030	10,588,446	7,951,293
8분위	93,823,536	21,861,952	12,385,432	9,300,722
9분위	109,570,072	25,531,074	14,464,097	10,861,676
10분위	151,339,743	35,263,882	19,978,016	15,002,301

소득 계층	퇴직일시금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20년	개인형	부부형
1분위	21,735,489	1,809,762	1,568,688	1,427,593
2분위	39,158,473	3,260,453	2,826,134	2,571,939
3분위	49,893,102	4,154,250	3,600,871	3,276,993
4분위	57,606,757	4,796,512	4,157,579	3,783,628
5분위	63,704,127	5,304,198	4,597,637	4,184,105
6분위	69,524,248	5,788,798	5,017,685	4,566,372
7분위	80,210,802	6,678,593	5,788,952	5,268,268
8분위	93,823,536	7,812,031	6,771,406	6,162,356
9분위	109,570,072	9,123,135	7,907,861	7,196,593
10분위	151,339,743	12,601,003	10,922,450	9,940,036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의 Simulation 결과 77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2004년 현재 소득 7분위에 속하는 40세의 근로자가 2019년 정년인 55세에 달했을 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89,158,472원이 된다. 이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대신 부부형 종신연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55세말부터 매년 5,855,953원씩을 받게 된다. 단, 본인이나 배우자가 모두 12년 내에 사망할 경우에도 12년차까지는 상속인에게 연금이 지급되게 된다.

<표 IV-11>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1)

(단위: 원)

소득 계층	퇴직일시금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1분위	24,160,124	5,629,584	3,189,323	2,394,992
2분위	43,526,677	10,142,211	5,745,858	4,314,797
3분위	55,458,775	12,922,526	7,320,987	5,497,625
4분위	64,032,902	14,920,395	8,452,838	6,347,578
5분위	70,810,447	16,499,640	9,347,526	7,019,436
6분위	77,279,812	18,007,076	10,201,533	7,660,744
7분위	89,158,472	20,774,939	11,769,608	8,838,275
8분위	104,289,734	24,300,695	13,767,051	10,338,236
9분위	121,792,826	28,379,114	16,077,595	12,073,317
10분위	168,221,985	39,197,637	22,206,602	16,675,837

소득 계층	퇴직일시금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20년	개인형	부부형
1분위	24,160,124	2,011,645	1,743,678	1,586,844
2분위	43,526,677	3,624,162	3,141,395	2,858,844
3분위	55,458,775	4,617,665	4,002,555	3,642,548
4분위	64,032,902	5,331,573	4,621,365	4,205,699
5분위	70,810,447	5,895,891	5,110,512	4,650,850
6분위	77,279,812	6,434,550	5,577,417	5,075,759
7분위	89,158,472	7,423,603	6,434,720	5,855,953
8분위	104,289,734	8,683,478	7,526,770	6,849,779
9분위	121,792,826	10,140,838	8,789,998	7,999,387
10분위	168,221,985	14,006,670	12,140,870	11,048,866

나. 기업규모별·연령별 퇴직연금액 산출

소득계층별 퇴직연금액 산출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회사규모별·연령별로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연금지급액을 산출한 것이 <표 IV-12>과 <표 IV-13>이다. 연령별로 연금지급기간의 중기가 상이하므로 일시납보험료 계산에 사용되는 투자수익률이 소득계층별 퇴직연금액 산출의 경우와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절차가 동일하다.

<표 IV-12>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2)

(단위: 원)

규모	연령	퇴직일시금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대기업	27	134,018,435	31,227,820	17,691,469	13,285,240
	35	112,433,141	26,558,431	14,842,044	11,145,491
	40	76,531,339	18,077,875	10,346,425	7,586,548
중소기업	27	121,688,936	28,354,907	16,063,880	12,063,018
	35	93,665,665	22,125,265	12,364,592	9,285,072
	40	46,390,377	10,958,118	6,271,608	4,598,676

규모	연령	퇴직일시금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134,018,435	10,700,484	9,672,341	8,802,368
	35	112,433,141	9,361,522	8,114,493	7,384,640
	40	76,531,339	6,372,230	5,523,399	5,026,600
중소기업	27	121,688,936	9,716,055	8,782,500	7,992,563
	35	93,665,665	7,798,886	6,760,012	6,151,987
	40	46,390,377	3,862,603	3,348,073	3,046,933

<표 IV-13>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2)

(단위: 원)

규모	연령	퇴직급여액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대기업	27	207,181,859	48,275,731	27,349,607	20,537,927
	35	150,336,371	35,511,755	19,845,563	14,902,837
	40	93,886,282	22,177,378	12,692,674	9,306,942
중소기업	27	188,121,433	43,834,435	24,833,483	18,648,468
	35	125,242,041	29,584,089	16,532,918	12,415,237
	40	70,194,312	16,580,972	9,489,709	6,958,359

규모	연령	퇴직급여액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207,181,859	16,542,098	14,952,671	13,607,762
	35	150,336,371	12,517,460	10,850,035	9,874,134
	40	93,886,282	7,817,255	6,775,935	6,166,477
중소기업	27	188,121,433	15,020,249	13,577,048	12,355,868
	35	125,242,041	10,428,030	9,038,934	8,225,932
	40	70,194,312	5,844,590	5,066,044	4,610,382

다.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연금액 산출

소득계층별 퇴직연금액 산출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회사규모별·연령별로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연금 지급액을 산출한 것이 <표 IV-14>이다. 예를 들어 2004년 현재 35세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3곳의 직장을 거쳐

8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55세에 퇴직하게 되는 경우 개인퇴직계좌(IRA)에 예치·부리된 전 직장의 퇴직일시금과 현 직장에서 받는 퇴직일시금을 합한 106,586,393원의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지급기간 별로 <표 IV-14>의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표 IV-14> 개인퇴직계좌 퇴직일시금의 연금지급액

(단위: 원)

규모	연령	퇴직급여액	확정연금		
			5년	10년	15년
대기업	27	175,908,796	40,988,751	23,221,321	17,437,830
	35	129,848,373	30,672,176	17,140,989	12,871,862
	40	82,136,160	19,401,820	11,104,152	8,142,153
중소기업	27	156,317,839	36,423,835	20,635,163	15,495,779
	35	106,586,393	25,177,339	14,070,228	10,565,904
	40	58,054,031	13,713,252	7,848,440	5,754,893

규모	연령	퇴직급여액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175,908,796	14,045,151	12,695,641	11,553,738
	35	129,848,373	10,811,567	9,371,381	8,528,477
	40	82,136,160	6,838,904	5,927,908	5,394,726
중소기업	27	156,317,839	12,480,943	11,281,728	10,266,999
	35	106,586,393	8,874,704	7,692,523	7,000,624
	40	58,054,031	4,833,754	4,189,859	3,813,005

4.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의 비교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은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퇴직연금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게 되는데 퇴직일시금의 규모, 연금지급기간에 따라 양자의 소득세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퇴직소득세와 연금소득세의 크기 비교를 위해 연금소득세를 55세 정

년인 퇴직시점의 현재가치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현재가치 환산표는 <표 IV-15>에 나타나있다. 예를 들어 27세의 근로자가 정년인 2032년 말부터 10년 동안 매년 1원씩 수령하는 10년 확정연금의 2032년 초 현재가치는 7.53763원이 된다. 연금의 현재가치는 유자비 0.5%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시납보험료와는 다르다.

<표 IV-15> 기말금 연금 현재가치

(단위: 원)

연령	확정연금				종신연금(12년 확정)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27	4.27028	7.53763	10.03758	12.46221	13.78691	15.14952
35	4.21236	7.53763	10.03758	11.95038	13.78691	15.14952
40	4.21236	7.36009	10.03758	11.95038	13.78691	15.14952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와는 달리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연금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가정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시기에는 자녀들이 출가하였거나 성인이 되어 가족구조가 부부 2인만이 살거나 아니면 미출가 성인자녀와 산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이런 양상은 2004년 3월 발표된 『2003년 혼인·이혼통계 결과(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동 통계에 의하면,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10년 전인 1993년에 비해 남자는 2.0세, 여자는 2.2세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통상의 퇴직연금수령연령인 55세에는 첫째 자녀가 빠르면 24세에 이르고 둘째 자녀라도 첫째 자녀와의 연령차를 감안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세가 넘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 2명으로 하고, 특별공제는 표준공제만을 반영하여 연금소득세를 계산하였다. 연금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 소득계층별 소득세 산출

1) 확정급여형

근로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퇴직일시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10분위 소득계층별 퇴직일시금액에 따라 <표 IV-16>과 같이 소득세액이 산출된다.

<표 IV-16>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1)

(단위: 원)					
소득계층	근속연수	퇴직일시금	결정세액	퇴직급여비례공제	근속연수공제
1분위	28	21,735,489	0	14,829,202	21,600,000
2분위	28	39,158,473	394,131	26,716,165	21,600,000
3분위	28	49,893,102	877,190	34,039,947	21,600,000
4분위	28	57,606,757	1,224,304	39,302,646	21,600,000
5분위	28	63,704,127	1,498,686	43,462,624	21,600,000
6분위	28	69,524,248	1,760,591	47,433,445	21,600,000
7분위	28	80,210,802	2,241,486	54,724,427	21,600,000
8분위	28	93,823,536	2,854,059	64,011,819	21,600,000
9분위	28	109,570,072	3,562,653	74,755,012	21,600,000
10분위	28	151,339,743	5,442,288	103,252,686	21,600,000
소득계층	퇴직소득과세표준	연평균과세표준	연평균산출세액	산출세액	기납입세액
1분위	0	0	0	0	0
2분위	5,116,165	182,720	16,445	460,455	66,324
3분위	12,439,947	444,284	39,986	1,119,595	242,406
4분위	17,702,646	632,237	56,901	1,593,238	368,934
5분위	21,862,624	780,808	70,273	1,967,636	468,950
6분위	25,833,445	922,623	83,036	2,325,010	564,419
7분위	33,124,427	1,183,015	106,471	2,981,198	739,712
8분위	42,411,819	1,514,708	136,324	3,817,064	963,005
9분위	53,155,012	1,898,393	170,855	4,783,951	1,221,298
10분위	81,652,686	2,916,167	262,455	7,348,742	1,906,453

예를 들어, 소득 8분위 40세 근로자의 경우 55세 정년에 받을 수 있는 퇴직일시금은 93,823,536원이다. 이 근로자의 경우 27세에 입사하여 13년간 근속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금 34,200,101원을 이미 중간정산 받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근로자는 급여비례에 의한 퇴직소득공제(64,011,819원)를 받을 수 있으며, 근속연수가 28년(13년+15년)이므로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는 21,600,000원(1,200만원+120만원×8년)이고, 따라서 퇴직소득과세표준은 42,411,819원 (93,823,536원+34,200,101원-64,011,819원-21,600,000원)이다. 이를 근속연수 28년으로 나누면 연평균과세표준이 1,514,708원이 되고, 해당 과세표준에 적용한계세율인 9%를 곱하면 연평균산출세액이 136,324원이 된다. 이를 근속연수 28년으로 다시 곱하면 산출세액이 3,817,064원이 되는데, 40세 시점에서 가정한 중간정산시 이미 963,005원을 소득세로 납부하였으므로 결정세액은 2,854,059원이 된다. 퇴직소득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17>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5년 확정연금)

(단위: 원)

소득 계층	산출세액 현 가	연 간 연금액	연 금 소득공제	기본공제 표준공제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출세액
1분위	0	5,064,616	3,512,923	2,600,000	0	0
2분위	838,572	9,124,370	4,312,437	2,600,000	2,211,933	199,074
3분위	1,692,016	11,625,661	4,562,566	2,600,000	4,463,095	401,679
4분위	2,305,281	13,423,030	4,742,303	2,600,000	6,080,727	547,265
5분위	2,790,045	14,843,787	4,884,379	2,600,000	7,359,408	662,347
6분위	3,252,767	16,199,941	5,019,994	2,600,000	8,579,947	772,195
7분위	4,413,651	18,690,030	5,269,003	2,600,000	10,821,027	1,047,785
8분위	6,578,180	21,861,952	5,586,195	2,600,000	13,675,756	1,561,636
9분위	9,081,999	25,531,074	5,953,107	2,600,000	16,977,966	2,156,034
10분위	16,426,108	35,263,882	6,000,000	2,600,000	26,663,882	3,899,499

8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한편 연금소득세의 경우 퇴직소득세와는 달리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종합소득과세를 받게 된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를 받으며, 여기서는 종합소득의 본인공제(100만원)와 배우자공제(100만원), 표준공제(60만원)를 받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예를 들어, 소득8분위 근로자의 정년시 퇴직일시금이 93,823,536원인데, 이를 55세말부터 5년 동안 확정연금으로 매년 수령한다면 연간 21,861,952원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연금소득공제는 5,586,195원이며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 260만원을 차감하고 나면 13,675,756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산출된다. 이 구간의 한계소득세율은 18%로써 1,561,636원의 종합소득세를 5년 동안 매년 납부하며 이를 퇴직시점의 현재가치로 전환하면 6,578,180원이 된다. 따라서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2,854,059원인데 비해 퇴직연금에 부과되는 소득세가 훨씬 많으므로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 수령을 원할 것이다.

<표 IV-1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소득세 현재가치(1)

(단위: 원)

소득 계층	퇴 직 소득세	연금소득세 현재가치					
		확정연금				종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1분위	0	0	0	0	0	0	0
2분위	394,131	838,572	0	0	0	0	0
3분위	877,190	1,692,016	111,960	0	0	0	0
4분위	1,224,304	2,305,281	651,564	0	0	0	0
5분위	1,498,686	2,790,045	1,078,102	0	0	0	0
6분위	1,760,591	3,252,767	1,497,018	373,592	0	0	0
7분위	2,241,486	4,413,651	2,338,036	1,139,196	261,220	0	0
8분위	2,854,059	6,578,180	3,409,339	2,141,603	1,236,461	393,495	0
9분위	3,562,653	9,081,999	4,648,571	3,410,727	2,377,814	1,521,605	896,165
10분위	5,442,288	16,426,108	9,247,497	6,777,238	5,744,325	4,752,601	4,016,789

<표 IV-18>는 각 소득계층별로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에 따라 부담하게 될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를 비교한 것이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보다 큰 부분인데,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거나 연금수령기간을 장기화하여 소득세를 절감하려 할 것이다.

2) 확정기여형

확정기여형의 경우도 퇴직일시금의 크기만 다를 뿐 확정급여형의 경우와 동일하다. 40세에 중간정산을 하면서 퇴직소득세액을 납부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소득 5분위 근로자는 55세 정년에 70,810,447원의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여 1,818,470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표 IV-19> 참조). 이 근로자 역시 27세에 입사하여 13년간 근속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퇴직금 23,221,120원을 이미 중간정산 받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IV-19>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1)

(단위: 원)

소득 계층	근속 년수	퇴직일시금	결정세액	퇴직급여 비례공제	근속연수 공 제
1분위	15	24,160,124	0	16,041,520	21,600,000
2분위	15	43,526,677	590,700	28,900,267	21,600,000
3분위	15	55,458,775	1,127,645	36,822,783	21,600,000
4분위	15	64,032,902	1,513,481	42,515,719	21,600,000
5분위	15	70,810,447	1,818,470	47,015,783	21,600,000
6분위	15	77,279,812	2,109,592	51,311,227	21,600,000
7분위	15	89,158,472	2,644,131	59,198,263	21,600,000
8분위	15	104,289,734	3,325,038	69,244,917	21,600,000
9분위	15	121,792,826	4,112,677	80,866,389	21,600,000
10분위	15	168,221,985	6,201,989	111,693,807	21,600,000

8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소득 계층	근속 연수	퇴직소득 과세표준	연 평균 과세표준	연 평균 산출세액	산출세액	기납입 세액
1분위	15	0	0	0	0	0
2분위	15	7,300,267	260,724	23,465	657,024	66,324
3분위	15	15,222,783	543,671	48,930	1,370,051	242,406
4분위	15	20,915,719	746,990	67,229	1,882,415	368,934
5분위	15	25,415,783	907,707	81,694	2,287,420	468,950
6분위	15	29,711,227	1,061,115	95,500	2,674,010	564,419
7분위	15	37,598,263	1,342,795	120,852	3,383,844	739,712
8분위	15	47,644,917	1,701,604	153,144	4,288,043	963,005
9분위	15	59,266,389	2,116,657	190,499	5,333,975	1,221,298
10분위	15	90,093,807	3,217,636	289,587	8,108,443	1,906,453

이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수령을 선택하는 대신 10년 확정연금을 선택하였다면 55세말부터 65세말까지 매년 부담하여야 할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는 3,355,025원으로 퇴직소득세 1,818,470원보다 많게 된다. 따라서 역시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퇴직일시금 수령을 선택하거나 연금 수령기간을 늘려 세부담을 경감시키려 할 것이다 (<표 IV-20> 참조).

<표 IV-20>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1)

(단위: 원)

소득 계층	퇴 직 소득세	연금소득세					
		확정연금				중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1분위	0	0	0	0	0	0	0
2분위	590,700	1,185,861	0	0	0	0	0
3분위	1,127,645	2,134,508	501,303	0	0	0	0
4분위	1,513,481	2,816,184	1,101,101	0	0	0	0
5분위	1,818,470	3,355,025	1,598,240	465,738	0	0	0
6분위	2,109,592	3,947,601	2,107,371	929,215	51,239	0	0
7분위	2,644,131	5,836,399	3,042,205	1,780,223	902,247	59,282	0
8분위	3,325,038	8,242,385	4,233,015	2,985,148	1,986,278	1,143,313	517,872
9분위	4,112,677	11,205,901	5,610,485	4,395,845	3,362,932	2,397,265	1,771,825
10분위	6,201,989	19,408,780	11,904,717	8,137,896	7,104,983	6,113,260	5,377,447

<표 IV-18>과 <표 IV-20>에서 보듯이 연금유형과 무관하게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세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금기간이 길수록 점차 격차가 작아져 연금으로 수령하되 급부기간을 길게 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는 퇴직연금 수혜자들의 성향에 달려 있을 것인데 퇴직일시금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과 국민연금 수령 개시기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20년 유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9분위 이하 소득계층에서는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액이 훨씬 크게 되어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연금전환 유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회사규모별·연령별 소득세 산출

회사 규모별·연령별 소득세 산출의 경우에도 소득계층별 소득세 산출과 같다. 다만, 소득계층별 소득세 산출의 경우와는 달리 중간정산을 가정하지 않고 2004년 현재부터 정년까지 해당연령의 근로자가 동일직장에서 근속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1) 확정급여형

확정급여형의 경우 일정 연령 이상에서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같다고 가정하였으므로 확정기여형의 경우보다 퇴직일시금의 크기가 작았다. 그러나 승급이나 승진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존재하거나 임금인상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퇴직연금의 종류별 퇴직일시금 크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

2004년 현재 중소기업의 27세 근로자가 28년을 근속하여 2034년에 정년 55세에 달하면 퇴직일시금은 121,688,936원이 되며, 퇴직급여비례공제와 근속연수공제 후 퇴직소득세로 3,532,002원을 납부하게 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어져 퇴직일시금과 퇴직소득세도 많아지며,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임금수준이 높으므로 대기업 근로자가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IV-21>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2)

(단위: 원)

규모	연령	근속연수	퇴직일시금	결정세액	퇴직급여 비례공제	근속연수 공제
대기업	27	28	134,018,435	4,086,830	67,009,217	21,600,000
	35	20	112,433,141	3,979,491	56,216,571	12,000,000
	40	15	76,531,339	2,723,910	38,265,670	8,000,000
중소기업	27	28	121,688,936	3,532,002	60,844,468	21,600,000
	35	20	93,665,665	3,134,955	46,832,832	12,000,000
	40	15	46,390,377	1,367,567	23,195,188	8,000,000

규모	연령	퇴직소득 과세표준	연 평균 과세표준	연 평균 산출세액	산출세액
대기업	27	45,409,217	1,621,758	145,958	4,086,830
	35	44,216,571	2,210,829	198,975	3,979,491
	40	30,265,670	2,017,711	181,594	2,723,910
중소기업	27	39,244,468	1,401,588	126,143	3,532,002
	35	34,832,832	1,741,642	156,748	3,134,955
	40	15,195,188	1,013,013	91,171	1,367,567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수령기간에 따라 매년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할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는 <표 IV-22>과 같다. 음영으로 표시된 구간이 연금소득세가 퇴직소득세 보다 많은 구간으로 합리적인 근로자라면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것이다. 퇴직일시금이 동일한 경우 연금수령기간이 길수록 연간수령 연금액이 작아지지만 연금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및 표준공제는 동일하므로 낮은 한계세율로 적용되어 연금소득세 부담이 더 적어진다.

<표 IV-2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2)

(단위: 원)

규모	연령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확정연금				종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4,086,830	13,549,645	6,731,168	5,381,192	4,071,892	3,356,556	2,647,690
	35	3,979,491	9,825,412	4,991,458	3,641,482	2,608,569	1,726,721	1,101,280
	40	2,723,910	3,995,915	2,193,751	875,593	0	0	0
중소기업	27	3,532,002	11,341,377	5,737,447	4,387,471	3,078,171	2,389,823	1,764,382
	35	3,134,955	6,757,866	3,478,855	2,128,879	1,225,150	382,185	0
	40	1,367,567	1,464,249	0	0	0	0	0

2) 확정급여형

일정연령대에 이르면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과 같아진다는 가정에 따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들의 경우 매년 1개월치의 평균임금이 각출되어 적립·부리되므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보다 많은 퇴직일시금을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많은 퇴직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2004년 현재 대기업의 35세 근로자가 20년을 근속하여 2024년에 정년인 55세가 되면 퇴직일시금은 150,336,371원이 되며, 퇴직급여비례공제와 근속연수공제 후 퇴직소득세로 5,685,137원을 납부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27세 근로자는 28년을 근속하여 퇴직시점에서 188,121,433원의 퇴직일시금을 받고 6,521,464원의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표 IV-23> 확정기여형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2)

(단위: 원)

규모	연령	근속 년수	퇴직급여액	결정세액	퇴직급여 비례공제	근속연수 공 제
대기업	27	28	207,181,859	7,379,184	103,590,930	21,600,000
	35	20	150,336,371	5,685,137	75,168,185	12,000,000
	40	15	93,886,282	3,504,883	46,943,141	8,000,000
중소기업	27	28	188,121,433	6,521,464	94,060,716	21,600,000
	35	20	125,242,041	4,555,892	62,621,021	12,000,000
	40	15	70,194,312	2,438,744	35,097,156	8,000,000

규모	연령	근속 년수	퇴직소득 과세표준	연 평균 과세표준	연 평균 산출세액	산출세액
대기업	27	28	81,990,930	2,928,247	263,542	7,379,184
	35	20	63,168,185	3,158,409	284,257	5,685,137
	40	15	38,943,141	2,596,209	233,659	3,504,883
중소기업	27	28	72,460,716	2,587,883	232,909	6,521,464
	35	20	50,621,021	2,531,051	227,795	4,555,892
	40	15	27,097,156	1,806,477	162,583	2,438,74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정년에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금을 원할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할 연금소득세를 정년 당시로 환산한 현재가치는 <표 IV-24>와 같다.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 보다 많은 부분으로 동 범주에 속한 근로자들은 현행 퇴직소득관련세제 하에서는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것이다.

확정급여형과 비교해보면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 보다 많은 부분이 음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연금수령기간이 동일한 경우 고액의 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일수록 연금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가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V-2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연금소득세 현재가치(2)

(단위: 원)

규모	연령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확정연금				중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7,379,184	26,653,542	18,655,091	13,522,069	9,968,646	9,253,309	8,517,497
	35	5,685,137	16,614,051	9,308,826	6,696,369	5,663,456	4,671,732	3,935,920
	40	3,504,883	6,793,428	3,592,507	2,146,660	1,240,956	397,991	0
중소기업	27	6,521,464	23,239,735	15,399,553	10,449,642	8,432,432	7,717,096	6,981,283
	35	4,555,892	12,119,544	6,023,817	4,673,841	3,640,928	2,649,204	2,018,933
	40	2,438,744	3,382,776	1,683,005	421,597	0	0	0

<표 IV-22>과 <표 IV-24>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즉 퇴직일시금의 크기가 클수록 퇴직소득세보다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빈도 차이는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액의 차이에서 나타난 것이나 전반적인 추세를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특징적인 결과는 확정기여형일 경우, 소득계층별 분석에서는 찾아보지 못했던 중신연금에서 조차도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소득세액에 비하여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젊은 층일수록 그리고 대기업일수록 현행 소득세제 하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국, 소득계층별 분석과 기업규모·취업연령별 분석을 종합하면, 퇴직연금 가입기간이 긴 대기업의 젊은 취업자들이 퇴직연금을 선호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것은 현 상황에서 중규모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현재 최고소득계층이 아닌 장년층들은 퇴직연금 전환 유인이 일부 있음을 함축해주는 결과이다.

3) 개인퇴직계좌(IRA)

이직시에도 퇴직일시금을 받지 않고 소득세를 이연하여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로 이관이 가능한 경우, 정년시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는 <표 IV-25>과 같다. 근속연수 공제에 사용되는 근속연수는 이직시 소요기간 1년씩을 제외하고 복수의 회사에서 근무한 총근속연수를 사용하였다.

<표 IV-25> 개인퇴직계좌(IRA)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

규모	연령	근속연수	퇴직일시금	퇴직소득세 (과세)	퇴직소득세(이연)	
					결정세액	퇴직급여 비례공제
대기업	27	27	175,908,796	6,436,136	6,079,896	87,954,398
	35	19	129,848,373	4,846,107	4,835,177	64,924,187
	40	14	82,136,160	3,083,209	3,048,127	41,068,080
중소기업	27	25	156,317,839	5,348,464	5,414,303	78,158,920
	35	18	106,586,393	3,922,617	3,860,388	53,293,196
	40	13	58,054,031	2,446,280	2,036,431	29,027,016

규모	연령	퇴직소득세(이연)				
		근속연수 공제	퇴직소득 과세표준	연평균 과세표준	연평균 산출세액	산출세액
대기업	27	20,400,000	67,554,398	2,502,015	225,181	6,079,896
	35	11,200,000	53,724,187	2,827,589	254,483	4,835,177
	40	7,200,000	33,868,080	2,419,149	217,723	3,048,127
중소기업	27	18,000,000	60,158,920	2,406,357	216,572	5,414,303
	35	10,400,000	42,893,196	2,382,955	214,466	3,860,388
	40	6,400,000	22,627,016	1,740,540	156,649	2,036,431

한편 이직시에 퇴직소득세의 이연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 이직시마다 근로자가 납부하게 되는 퇴직소득세의 55세 정년시 증가를 퇴직소득세(과세)란에 기재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퇴직소득세 이연이 허용될 경우에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퇴직소득세 이연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가 이직시마다 받는 퇴직일시금의 증가는 이연 허용시의 퇴직일시

금 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소득세의 이연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IRA)의 퇴직일시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가입자가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를 비교하여 <표 IV-26>에서 연금소득세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 보다 큰 부분에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동 범주에 속하는 근로자들은 퇴직연금보다는 퇴직일시금을 선호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노후생활자금에 조기에 소진되어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게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행 세제상에서는 근로자들이 퇴직일시금 대신 퇴직연금을 선택하여 소득세의 이연효과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의 수령기간을 장기간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소득세 절감목적으로 연금수령기간을 근로자의 평균여명보다 늘리는 경우 퇴직연금 중 많은 부분이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유족에게 상속됨으로서 퇴직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표 IV-26> 개인퇴직계좌(IRA) 연금소득세 현재가치

(단위: 원)

규모	연령	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확정연금				종신연금 (12년 확정지급)	
			5년	10년	15년	20년	개인형	부부형
대기업	27	6,079,896	21,052,397	13,430,949	8,757,430	7,448,130	6,732,794	5,996,981
	35	4,835,177	12,944,559	6,395,073	5,045,098	4,012,185	3,020,461	2,348,939
	40	3,048,127	4,899,378	2,645,482	1,277,132	399,156	0	0
중소기업	27	5,414,303	17,543,569	10,273,003	7,178,458	5,869,158	5,153,821	4,418,009
	35	3,860,388	8,840,610	4,520,227	3,170,251	2,150,815	1,307,849	682,409
	40	2,036,431	2,404,305	780,815	0	0	0	0